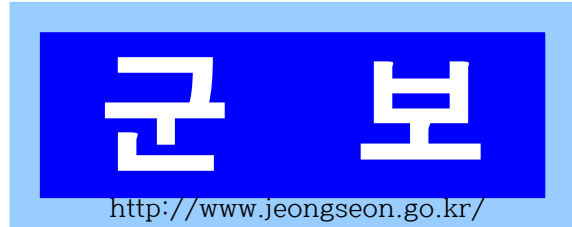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13호 2017. 3. 7. (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562호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563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 조례 제2564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정선군 조례 제2565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566호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17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81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18

조 례

제235회 정선군의회(2017. 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62호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 각 호의 어느 하나---- 사람을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①----- ----- 30일 이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③제2항에 따른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 ----- 그 밖에 ----- ----- - 해당 ----- -----.

② (생 략)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 -----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	---

개 정 이 유

- 조례 제정 근거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시행(2016.11.30.)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7조)

제235회 정선군의회(2017. 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63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영장

제6조의 제목 “(입장료)”를 “(입장료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람시간)”을 “(관람시간 및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람시간은”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0.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

【 별표 2 】

야영장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고
	평일	주말·공휴 일		
사용료	20,000원	30,000원	30,000원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전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4조(시설) ----- -----. 1. ~ 4. (현행과 같음) 5. 야영장
제6조(입장료) (생 략) <u><신 설></u>	제6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8조(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 ----- . 다만,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코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체험학습장 시설설치 범위에 야영장 추가(안 제4조)
- 야영장 사용료 추가(안 제6조)
- 야영장의 운영시간(24시간) 추가(안 제8조)
-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사업의 범위에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 추가(부칙)

제235회 정선군의회(2017. 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64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공제”를 각각 “안전재해보험”으로, “공제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3조 중 “농업인 중 농업인안전공제”를 “농업인 및 임업인 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공제”를 “안전재해보험”으로, “공제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공제”를 각각 “안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를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하여”로 한다.

제6조 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공제”를 “안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청구서

신 청 인 (단체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안전재해보험 가입내용	가 입 유 형	예) 일반3형					
	재해보험회사	예) NH농협생명 (○○농협)					
	보 장 금 액	₩					
	가 입 비 (정 산 액)	계	국. 도비	군 비	지역농협	기 타	
군비지원금 신 청 액	₩	(금 원)					
군비지원금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농.축협장 ○ ○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보험증권 사본 1부. 단체가입자는 개별 명단 1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 종사자를 말한다.

3. “안전공제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할 공제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 등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안전공제 가입기관인 농·축협에서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축협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제5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등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보장내용 등 실질적 이익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3. --안전재해보험-----
----- 안전재해보험-----
----- 보험료-----.

제3조(지원대상) ----- 농업인 및 임업인 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제4조(지원기준) -----
----- 안전재해보험-----
----- 보험료-----.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 안전재해보험
----- 안전재해보험 -----
-----.

②-----
---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하여 -----.

제6조(보조금의 지급) -----
----- 5일 -----
-----.

제7조(사후관리) ----- 안전재해보험

-----.

제9조(시행규칙) ----- 필요-----
-----.

개 정 이 유

- 농·임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질병재해를 보상하는 안전재해보험을 그동안 농업인과 임업인을 분리·운영하고 있어 국정감사(‘12~’ 15)에서 임업인의 안전보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16.1.7.일부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안전보험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농(임)업인이 동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농업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여 임업인을 포함(안 제2조제2호)
- 안전재해보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제235회 정선군의회(2017. 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65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람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30명”을 “유료인원 30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관람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관람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관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각각 “관람료”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구 분		관람료			시설사용료									
		화 암 동 굴			야 영 장		캠 핑 캐 라 반			모 노 레 일			카 트	
		어 른	청 소 년 · 군 인	어 린 이	노 지 사 용 료	데 크 사 용 료	3 인 용	4 인 용	6 인 용	어 른	청 소 년 · 군 인	어 린 이	1 인 승	2 인 승
일 반	개 인	5,000	3,500	2,000	10,000	20,000	· 성수기 10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00,000 - 평일 60,000	· 성수기 12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20,000 - 평일 70,000	· 성수기 15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50,000 - 평일 80,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단 체	4,500	3,000	1,500										
폐광지 역주민, 명예군 민, 자매결 연 도시민, 정선군 숙박관 광객	개 인	3,500	2,500	1,500										
	단 체	3,000	2,000	1,000										
투표자	개 인	3,000	2,000	<삭제>										
	단 체	2,500	1,500	<삭제>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중복감면은 불가함.

※ 성수기: 7월 ~ 8월,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3. ----- 말한다.(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 근무요원 포함)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u>사람으로</u> <u>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병장</u> <u>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u>	4. ----- <u>사람을</u> 말 <u>한다.</u>
5. “단체”란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 하는 일행을 말한다.	5. ----- <u>유료인원 30명</u>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 른 <u>관람료 및 시설사용료</u>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 ----- <u>관람</u> <u>료</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이 상의 노인. <u>다만, 모노레일의 이용은 제외한다.</u>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이 상의 노인. <단서 삭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감면) ①폐광지역 주민, 명예군민, 투표 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 박을 한 관광객에게는 <u>관람료 및 시설사용료</u> 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7조의2(감면) ①----- ----- ----- <u>관람료</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폐광지역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 시민에 대한 <u>관람료 및 시설사용료</u> 는 [별표 1]에 서 정한 감액된 요금 으로 한다.	③----- ----- <u>관람료</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지역관광패키지상품 개발 시 협약을 통하여 <u>관</u> <u>람료 및 시설사용료</u> 를 감면할 수 있다.	⑤----- <u>관람료</u> -----.

제9조(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u>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u> ② (생 략)	제9조(요금의 반환)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구분(안 별표 1)
 - 관 램 료: 화암동굴
 - 시설이용료: 야영장, 캠핑캐라반, 모노레일, 카트
- 투표자 중 어린이가 없으므로 감면료 삭제(안 별표 1)

제235회 정선군의회(2017. 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66호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규정(안 제2조)

규 칙

2017년도 제1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81호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에 관하여”를 “회계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제2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 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를 “「지방재정법」 제45조” 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에 따라” 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를 “세출예산월별 집행·지출계획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8조에 따른” 으로, “세무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세무회계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출원과” 를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결과를” 을 “결과를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4항” 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로,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 를 “제1호부

터 제8호까지”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 를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및 통합지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 을 “재무관,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출내역” 을 “이상 지출내역”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로, “세무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8호 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출원” 을 “지출원,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 을 “통합지출관, 재무관” 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 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2” 를 “영 제12조” 로, “영 제59조의3” 을 “영 제14조” 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의 사유로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 을 “그 밖의 사유로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 로, “제32조의 규정” 을 “제32조” 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 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을 “다음 연도 2월” 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9조 중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40조와 제108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를”을 “이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세무회계과장”을 “따라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무회계과장은 제19조 제3항”을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이에”를 “제3항을”로 한다.

제49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영 제52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법 제90조” 를 “법 제45조” 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통합지출관의 의무)” 를 “(통합지출관의 임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 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3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 을 “통합지출관” 으로, “제1항에 따른” 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 을 “경비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제1항 중 “선금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를 “선금금 지급에 관하여” 로, “별지 제50호~ 제57호서식” 을 “별지 제50호서식부터 제57호서식까지” 로 한다.

제59조 중 “(송금·집합)” 을 “(계좌·현금)” 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 을 “현금지급명령” 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2조에 따라” 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 를 “영 제45조제2호” 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26조에 따라” 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 및” 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회계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세무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73조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 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관리는 세무회계과장” 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3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을 “현금지급명령을” 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 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서”로 한다.

제111조 중 “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0조에 따른”으로, “이를”을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로 한다.

제123조제3항 중 “의한 신용카드로”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을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한다.

제131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3조 내지 제75조”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본청 세무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4조 중 “군수”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4조 중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16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으로,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이전비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목	통계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현공	말 재정	완 예	정 공일	이월사유
예산 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별지 제36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 별지 제37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금고		①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지출원	금고
재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63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정선군수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	금회교 부	합 계		

<별지 제64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8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납 입 통 지 서

위 탁 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 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69호서식>

위 탁 서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x xx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 행	xxx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계좌 입금용)

납 입 통 지 서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xx 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 행	xx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xx 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 행	xxx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 결산 및 <u>재무회계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회계관리에</u> ----- -----.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 계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u>범위내</u> 에서는 독 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3. ----- ----- <u>범위</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규 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 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 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 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 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 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⑤ ----- <u>다른</u> ----- ----- -----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 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

가. ~ 하. (생 략)

2. ~ 6.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생 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⑤ (생 략)

제10조(투자심사)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에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 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 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② (생 략)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나. ~ 가. (현행 가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투자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집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회계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회계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9조에 따른 -----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 제17조에 따라 -----

----- 세출예산월별 집행·지출계획서-----

-----.

② -----

-----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8조에 따른 -----

----- 통합지출관, 세무회계과장-----
-----.

-----.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 및 기타관서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회계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장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무회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② (생략)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③ (생략)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③ -----

-----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

④ -----

----- 결과를 통합지출관, -----.

제20조(예산의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범위에서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
----- 어느 하나에 -----.

1. ~ 6.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세무회계과장의,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7. (생략)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생략)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이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른 -----
-----, -----
-----.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
--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그
밖에 -----
-----.

3. 그 밖에 -----

②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회계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회계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별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세무회계과장 및 통합지출관 -----

-----.

③ -----
재무관, 통합지출관 -----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 이상 지출내역 -----
-----.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
른 -----

-----.

② ----- 제1항에 따른 -----
----- 「지방재정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

----- 통합지출관,
세무회계과장 -----
-----.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

----- 별지 제8호서식 -----
-----.

② -----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
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 략)

② 세무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세무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
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생 략)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정정 등) 착오 기타의 사
유로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의 징수결
정의 취소, 정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
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
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 지출원, 통합지출관
-----.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
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

③ 통합지출관-----
-----.

④ ----- 영 제12조-----
영 제14조-----.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정정 등) --- 그 밖의 사
유로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
----- 제32
조-----.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
라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
일-----
-----.

② ----- 다음 연
도 2월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
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
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생략)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9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같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생략)

<신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0조와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③ (생략)

-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생략)

-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생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별지 제40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제35조(납입고지서) -----
--- 따른다.

1. ----- 5일전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의 -----

제39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에 따라 -----

-----.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40조와 제108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따른 -----
-----.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
-.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영 제30조에 따라 -----

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무회계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생략)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2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3조(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 3. (생략)

<신설>

-----, -----
----- 제3항을 -----
-.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
-----, ---- 영 제52조-----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52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금, 개산금에 대한 정산금,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별지 제50호~ 제57호서식의 지출결의서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9조(송금통지) 별지 제61호서식의 (송금·집합) 지급명령 또는 제54조제2항 규정의 별지 제48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 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별지 제60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 경비는 -----

-----.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에 따른 -----

-----.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 -----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 별지 제50호서식부터 제57호서식까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송금통지) ----- (계좌·현금) -

-----.

제60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

- 현금지급명령 -----

-----.

다.

② (생 략)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별지 제63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같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8조(개산급의 정산)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 제62조에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개산급의 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45조제2호-----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영 제26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116호 서식으로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u>세무회계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u>세무회계과장</u>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생 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17호서식에 의거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u>세무회계과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u>제1호 내지 제6호</u>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6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④ 자금의 <u>관리</u>는 <u>세무회계과장</u>이 주관한다. 제8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② (생 략)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u>제2항의 규정</u>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u>제1항 내지 제3항</u>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u>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구분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u>영 제139조의 규정</u>에	제71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통합지출관 및 세무회계과장</u>, -----. ③ <u>통합지출관</u>----- ----- -----. 제72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통합지출관 및 세무회계과장</u>-----. 제73조(대체수지의 범위)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1호부터 제6호까지</u>----- ----- 제76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관리·운용</u>은 <u>통합지출관</u>-----. 제8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2항</u>----- ----- -----.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제86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 <u>영 제51조제1항에 따라</u> ----- ----- -----.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u>출납원의 장부 및 보</u>
---	---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0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2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0조(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서에 년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1조(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112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

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2조(금고약정의 방법) -----
----- 영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제110조(지급절차) ① -----
-- 현금지급명령을 -----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

② 제1항에 따른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서-----
-----.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지급의 증명) ----- 제54조제2항-----

-----.

제112조(송금지급절차) -----
- 계좌지급명령-----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
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6
호서식의 집합지급금액 명세표에 의하여 송금하
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2조의 규정
에 준한다.

제114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
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
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별지 제86호서식의 집합지급
금액 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생략)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
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
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5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
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 ② (생략)

-----.

<삭 제>

제114조(지급의 거부) ① -----
----- 어느 하나에 -----
-----.

1. (현행과 같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
급명령한 내역이 --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현금지급명령통지-----
-----.
-----.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 ② -----
--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115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 현금지급명령통
지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생략)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대신에 별지 제50호서식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1조(과목경정 등) ① (생략)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101호서식의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 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3조 내지 제7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2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을 별지 제102호서식으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9호서식의 군금고 또는 군공금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세무회계과장에게 제

제12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0조에 따른 -----
-----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
-----.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
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일회계 내
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
-----.

제132조(지출계산서) ① -----

----- 통
합지출관 -----.

출하여야 한다.

- ② 본청 세무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3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0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 ② 통합지출관-----

-----.

제133조(출납계산서) ① -----

----- 통합지출관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통합지출관 -----.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

-----.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
-----.

- ② -----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 -----

-----.

제161조(국가규정의 준용) -----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 시행령, -----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
한다.

-----.

개 정 이 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계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주 요 내 용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추가(안 제2조)
 -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 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4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 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 대행점과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장에게 세출 예산 한도액을 통지(안 제4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3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 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안 제59조, 제60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안 제2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 기한인 다음 회계 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추가(안 제57조)
 -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3조)
 - 100만원 이하 지급의 경우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

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0조)

○ 서식 정비

-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이월비집행상황조서), 별지 제36호서식(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별지 제37호서식(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등 개정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별표 개정